



2026. 2. 9.(수) 09:30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발의년월일: 2026. 1. 27.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9인

2. 제안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제1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변경사항(제1조- 안 제3조제2항제2호)

- 문화교육국, 남양주시문화재단을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사항(제1조- 안 제3조제2항제3호)

-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도시교통위원회로 이관

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변경사항(제1조-안 제3조제2항제4호)

- 농업기술센터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

마.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정비(제2조 ~ 제4조 안)

-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내용 중 상임위원회 명칭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다.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1. 27. ~ 2. 1.(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사항과 소관부서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를 정하는 사항은 개인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사항임

- 우리 의회도 그간 소관부서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있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미뤄져 왔으며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10대 개원에 앞서 소관부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일을 제10대 개원일로 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
-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서용관